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415
----------	-------

발의연월일 : 2026. 9. 16.

발 의 자 : 전진숙 · 이개호 · 문금주
이수진 · 손 술 · 이주희
김영배 · 윤종오 · 전종덕
정혜경 의원(10인)

제안이유

과거 우리 사회는 성매매를 윤락행위로 정의하여 성매매를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비도덕적인 개인의 문제행위로 치부하였으나, 2000년 9월 19일 군산 대명동 화재 참사로 성매매가 여성의 인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조직적·구조적 폭력이라는 점이 드러남에 따라 현행법은 성매매가 개인의 윤리적 차원을 넘어 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이라는 반성적 고려 끝에 제정된 것임.

현행법의 입법 취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부터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성매매자를 피해자와 성판매자로 구분하여 피해자의 성매매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지만 그 밖에 성매매자는 처벌

하도록 하고 있어, 강제강요 등 성매매알선자의 위법성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여성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판매자로 처벌을 받게 되어 피해자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제적으로 성매수 수요를 억제하여 인신매매범들과 착취자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성매수자와 알선 등을 한 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대응책이 성매매행위 등의 감소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 유효함이 강조되고 있고, 2011년 제49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대한민국에 유엔 여성차별철폐 협약 제6조의 완전한 이행을 권고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개입된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성매매관련 정책과 형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음.

이에 현행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성매수 행위가 성착취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성매수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전체의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매수, 성매수알선 등 행위 및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함으로써 성매수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평등한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성매매를 성매수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로 용어를 전환하고,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며, 성매수 대상자와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 범죄를 규정함(안 제2조).

- 1) 성매수를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하도록 하는 행위로 정의함.
- 2) 성매수알선 등 행위는 성매수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수 대상자를 고용, 모집 또는 성매수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수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함.
- 3) 성매수 유인 촬영물 제작 및 알선이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촬영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함.
- 4) 성매수 및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성매수 또는 성매수 유인 촬영물을 제작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거나 그 밖의 성착취 목적으로 해당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으로 정의함.
- 5)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대상자란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 및 촬영물제작, 인신매매의 대상이 된 자를 의미하고, 이 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다. 이 법에 위반한 행위로 얻은 범죄수익과 그 과실(果實)로 얻은 재산 등도 몰수하도록 하며, 재산의 사정 등으로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함(안 제11조).

라.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지원시설등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범죄현장에 출동하여 성매수 대상자를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기관 또는 지원시설등에 인도하여야 함(안 제16조).

마. 이 법의 위반행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 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함(안 제18조).

바. 성매수 대상자에 대한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조사하도록 함(안 제19조).

사. 성매수 대상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아. 수사 및 재판절차에 대한 특례를 강화하여 수사기관·법원 또는 소송관계인은 성매수 대상자의 나이·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또는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게

주의하도록 함(안 제22조).

자. 법원은 성매수 대상자의 사생활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23조).

차. 법원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성매수 대상자 등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증인지원시설을 설치하고 증인지원관을 두도록 함(안 제24조).

카.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성매수 대상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함(안 제25조).

타. 법무부장관은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매수 대상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도록 하고, 진술조력인에게 수사 및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

파. 성매수 대상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성매수 대상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해당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34조).

하. 성매수알선 등 행위자나 성매수 및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매수 대상자 등에게 가지는 채권은 무효로 함(안 제35조).

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인 성매수 대상자에 대한 보호와 지

원에 있어서 국적 또는 체류 지위를 이유로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은 외국인인 대상자에게 필요한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36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 성매수·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범죄를 근절함으로써 성매수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른 사람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란 다른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

위

다. 자위 행위

라. 그 밖에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성매수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망 또는 유인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의 성을 매수하도록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수 대상자를 고용, 모집하는 행위

나. 다른 사람의 성을 매수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다른 사람의 성을 매수하는데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라. 다른 사람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 광고 또는 홍보하는 행위

마. 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및 그 밖의 매체를 이용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 광고, 홍보하는 행위

3. “성매수 유인 촬영물 제작 및 알선”이란 다른 사람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하면 대가를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자위행위

라. 기타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

4. “성매수 및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란 성매수 또는 성매수 유인 촬영물을 제작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거나 그 밖의 성착취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이하 “아동·청소년”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하지 아니한다.

가.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약취·유인·매매하는 행위

나.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다.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사람을 모집·이동·은닉

하는 행위

5.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의미한다.

6.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의 대상자”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의 상대방이 된 사람을 의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본다.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식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2. 다른 사람을 고용·감독하는 사람, 출입국사무·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의 대상자가 될 것을 알면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수, 성매수알선 등 행위 및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財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의 증진과 형사사법의 공조(共助)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성매수 및 성매수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5조(폭행·협박을 이용한 성매수알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매수 대상자가 되도록 한 사람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3.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매수 대상자가 되도록 한 사람
4.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수 대상자가 되도록 강요한 사람
2. 성매수 대상으로 고용·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

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의 죄를 범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4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사람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4항의 죄를 범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매수 대상자가 되도록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수 대상자가 되도록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매수 대상자가 되도록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제2조제1항제4호의 목적으로 같은 호 각 목의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제6조(성매수알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수알선 등 행위를 행한 사람

2. 성매수 대상자를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매수 대상자가 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은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의 알선 등을 한 사람
2. 성매수 대상자를 모집한 사람
3. 성매수 대상자가 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4. 성매수 대상자가 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방법을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5.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6. 다른 사람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제7조(성매수 및 광고물 제작·공급 등) ① 영업으로 성매수 대상자가 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업으로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성매수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제5조 또는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9조(미수범) 제5조부터 제7조(제7조제3항은 제외한다)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5조제4항, 제6조,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11조(몰수 및 추징)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범죄수익”이라 한다)은 몰수하며, 제35조제1항에 따른 채권과 관련된 증서는 폐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수익의 과실(果實)로 얻은 재산, 범죄수익의 대가(對價)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은 몰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몰수 및 추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2조(형의 감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보상금) ①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8조의 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

에게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인터넷 또는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응급조치의무 등) ① 이 법에 위반한 행위의 신고를 접수한 지원시설등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범죄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시설등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지원시설등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현장에 출동한 사람은 성매수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를 성매수 및 성매수 알선 등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기관 또는 지원시설등에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람은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자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시설등의 직원은 대상자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신고인 및 관계인 등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신고자 및 관계인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성매수 및 성매수 알선 등 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범죄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성매수 대상자 및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성매수 및 성매수 알선 등 행위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대상자임이 확인된 때에는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원시설등에 연계하여 수사 절차상 조력 및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치는 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이 법에 위반한 행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 또는 대상자를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訊問)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대상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이 법에 위반한 행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

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대상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 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대상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국가수사본부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사건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대상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에게 이 법 위반행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대상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위반행위를 전담하여 조사하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19세 미만인 대상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

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대상자(이하 “19세미만대상자등”이라 한다)를 조사할 때에는 대상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대상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대상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대상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대상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대상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1조(전담재판부)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

으면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사건 전담재판부(이하 “전담재판부”라 한다)를 지정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한다.

제22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대상자의 나이,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대상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대상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대상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19세미만대상자등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19세미만대상자등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19세미만대상자등의 진술을 위하여 아동 등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대상자 조사 및 증인신문을 할 것
3. 19세미만대상자등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19세미만대상자등에게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

5. 그 밖에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19세미만대상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23조(심리의 비공개) ① 법원은 대상자의 사생활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대상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신문의 방식 및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심리의 비공개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7조제2항·제3항 및 「군사법원법」 제67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제24조(증인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법원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신고자 및 대상자등이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한다.

② 각급 법원은 제1항의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신고자 및 대상자등의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이하 “증인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③ 법원은 증인지원관에 대하여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④ 증인지원관의 업무·자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

칙으로 정한다.

제25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대상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대상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대상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대상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대상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진술조력인 양성 등) ① 법무부장관은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진술조력인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진술조력인의 자격, 양성 및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한 진술조력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술조력인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

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라.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86조의2 및 제87조의 죄

6. 제28조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단, 제27조제1호에 해당되어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제27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31조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된 경우
5. 진술조력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진술조력인에게 자격 취소 예정인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진술조력인은 법무부에 출석하여 소명(疏明)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소명하거나 소명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진술조력인 자격 취소 여부를 결정

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람에게 진술조력인 자격 취소의 사실 및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진술조력인 자격이 취소된 사람의 자격증 반납에 관해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대상자가 19세미만대상자등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대상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대상자를 조사하기 전에 대상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대상자를 면담하여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대상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검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① 법원은 대상자가 19세미만대
상자등인 경우 재판과정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대상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문 전에 대상자, 법
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
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진술조력인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
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진술조력인의 의무) ① 진술조력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
여할 때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호 간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진술조력인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
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
적사항과 사진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진술조력인은 「형법」 제

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대상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증거보전 특례) ① 대상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사법경찰관은 대상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해당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가 19세미만대상자등인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에 따라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대상자등이 제1항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18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35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등) ① 성매수알선 등 행위자나 성매수·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매수 대상자 또는 성매수 대상자가 될 사람(이하 “성매수 대상자

등”이라 한다)에게 가지는 선불금 등의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 없이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같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불법원인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 성매수의 유인·강요 수단이나 성매수알선 등 업소로부터의 이탈방지 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작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수 대상자들을 조사할 때에는 제1항의 채권이 무효라는 사실 및 지원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6조(외국인에 대한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등 행위의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있어서 국적 또는 체류 지위를 이유로 제외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인 대상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서 집행의 유예, 보호 일시 해제 및 체류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를 따른다.

③ 수사기관 및 법원은 외국인인 대상자에게 필요한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벌칙

제37조(비밀엄수 등의 의무의 위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게재하거나 공개 또는 방송한 사람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상자의 신원과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사람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보호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호처분절차, 보호처분의 집행이 진행 중인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제4호 중 “성매매”를 “성매수”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제2호가목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단서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각각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1항제4호다목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 범죄”로 한다

⑧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3제1항제1호가목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제8호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각각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제3호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성매매”를 각각 “성매수”로 한다.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각각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성매매”를 “성매수”로 한다.

⑫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1)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1호”를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성매수알선 등 행위”로, “성매매에”를 “성매수에”로 한다.

⑬ 법관징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 범죄”로 한다.

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3호 중 “성매매”를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 범죄”로 한다.

⑮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제19호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를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로 한다.

⑯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의2 중 “성매매”를 “성매매등범죄”로 한다.

제38조 제목 중 “성매매”를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 범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성매매”를 각각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 범죄”로 한다.

⑰ 양성평등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 제목·제1항 및 제2항 중 “성매매 범죄”를 각각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 범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성매매”를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 범죄”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 중 “성매매”를 “성매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항부터 제6호까지 중 “성매매”를 각각 “성매수”로 한다.

⑱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성매매”를 “성매수”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성매매”를 “성매수”로 한다.

⑲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제6호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성매매 등의”를 “성매수 등의”로 한다.

⑳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성매매 동의”를 “성매수 동의”로 한다.

㉑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성매매”를 “성매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9조(미수범)의 죄(같은 법 제5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㉒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9조(미수범)의 죄(같은 법 제5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㉓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4제1항제3호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성매수알선 등 행위 및 제4호에 따른 성매수 및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로 한다.

㉔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의 대상자

㉕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 범죄

㉖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성매매 행위나”를 “성매수 행위나”로 한다.

㉗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 중 “성매매”를 “성매수”로 한다.

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성매매 행위가”를 “성매수 행위가”로 한다.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성매수알선 등 행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성매매알선등행위”를 “성매수알선 등 행위”로 한다.

㉩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8조제2항 중 “성매매”를 “성매수”로 한다.

제289조제3항 중 “성매매”를 “성매수”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